

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
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(제10조의2제2항 관련)

1.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

대상	요건	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
국가대표선수 (국가대표선수 였던 사람을 포 함한다)	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•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, 아시아올림픽평의회, 종목별 국제연맹,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•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	• 자격검정: 해당 없음 • 연수과정: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

2.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

대상	요건	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
가. 학교체육교 사(학교체육 교사였던 사 람을 포함한 다)	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1급·2급) 또는 준교사 자격(체육 과목)을 가지고,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(3시간)
나. 국가대표선 수(국가대표 선수였던 사 람을 포함한 다)	•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, 아시아올림픽평의회, 종목별 국제연맹,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• 연수과정: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(3시간)
다. 문화체육관	•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

광 부 장 관 이 지정하는 프 로 스포츠 단 체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 선수(프로스 포츠 선수였 던 사람을 포함한다)	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	기구술시험 중 구술 • 연수과정: 2급 전문스포 츠지도사 특별 연수과 정
라. 2급 전문스 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 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 을 취득하려 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 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스포츠윤리센 터의 스포츠윤리교육(3 시간)

3.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

대상	요건	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
가. 학교체육교 사(학교체육 교사였던 사 람을 포함한 다)	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1급·2급) 또는 준 교사 자격(체육 과목)을 가지고, 같 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 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 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1급 생활스포 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나. 국가대표선 수(국가대표 선수였던 사 람을 포함한 다)	•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, 아시아올림픽평 의회, 종목별 국제연맹, 종목별 아 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	• 자격검정: 해당 없음 • 연수과정: 1급 생활스포 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
	을 것	
다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(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)	•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• 연수과정: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라.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(3시간)
마.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• 연수과정: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(3시간)
바.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필기시험과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• 연수과정: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
는 사람		
------	--	--

4.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

대상	요건	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
가.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(3시간)
나.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• 연수과정: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다.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• 연수과정: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라.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중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
목이 아닌 다른 종목 (별표 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	
마.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바.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
5.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

대상	요건	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
국가대표선수 (국가대표선수	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•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	• 자격검정: 해당 없음 • 연수과정: 1급 장애인스

있던 사람을 포함한다)	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,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, 국제스포츠연맹,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,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•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	포츠지도사 과정
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

6.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

대상	요건	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
가. 학교체육교사(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)	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1급·2급) 또는 준교사 자격(체육 과목)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나. 국가대표선수(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)	•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,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, 국제스포츠연맹,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,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• 연수과정: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다.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(3

한 자격 종 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		시간)
라. 2급 생활스 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 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(별표 1 제2호의 비 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필 기시험 중 특수체육론 과 별표 2의 실기구술 시험 • 연수과정: 2급 장애인스 포츠지도사 특별 연수 과정
마. 유소년스포 츠지도사 자 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 (별표 1 제4 호의 비고에 서 다른 종 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)의 자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필 기시험 중 특수체육론 과 별표 2의 실기구술 시험 • 연수과정: 2급 장애인스 포츠지도사 특별 연수 과정

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	
바.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(별표 1 제5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필기시험 중 특수체육론과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
7. 유소년스포츠지도사

대상	요건	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
가. 학교체육교사(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)	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1급·2급) 또는 준교사 자격(체육 과목)을 가지고,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나.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(3시간)

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		
다. 전문스포츠 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 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 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 기구술시험 중 구술 • 연수과정: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라. 노인스포츠 지도사 자격 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 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 기구술시험 중 구술 • 연수과정: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마. 2급 생활스 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 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 을 취득하려 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 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바.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 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 한 자격 종 목이 아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 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
다른 종목 (별표 1 제3 호의 비고에 서 다른 종 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)의 자 격을 취득하 려는 사람		
사. 노인스포츠 지도사 자격 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 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
8. 노인스포츠지도사

대상	요건	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
가. 노인스포츠 지도사 자격 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 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스포츠윤리센 터의 스포츠윤리교육(3 시간)
나. 전문스포츠 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 기구술시험 중 구술 • 연수과정: 노인스포츠지

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	도사 특별 연수과정
다.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• 연수과정: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라.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마.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 (별표 1 제3호의 비고에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

서 다른 종 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)의 자 격을 취득하 려는 사람		
바. 유소년스포 츠지도사 자 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	• 해당 없음	• 자격검정: 별표 2의 실 기구술시험 • 연수과정: 노인스포츠지 도사 특별 연수과정

비고

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과정은 별표 4에 따르되, 특별 연수과정은 제11조의2제 4항에 따른다.